



축산업등록제 도입 필요성 및 과제

1. 축산업등록제의 필요성

우리 나라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축질병을 철저히 예방하고, 이와 동시에 축산물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축사육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업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牛)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및 계란집하업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등록토록 한다. 둘째, 종축업·부화업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사실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격에서 점차 고품질, 위생·안전성 등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정부의 인식은 타당한 것이다.

축산업등록제 도입의 연혁을 살펴보면, 현재 가축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EU의 경우 광우병,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하면서 축산물 소비량이 감퇴하고, 신뢰도가 저하하게 되자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업계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축산업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고품질·위생·안전성 확보 및 동물복지가 향후 축산업 생존의 관건이 되는 바,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추적시스템(trace back system) 구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한 성 일 교수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특 집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에서의 축산물 생산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이 요구될 것 인바, 축산업등록제는 그 전제조건이 된다.

셋째, EU, 일본을 위시한 선진외국의 경우 수입축산물 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하여 점차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축산물품질인증제도 등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CODEX지침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적극적이다. 이는 향후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여겨지는 바, 축산업등록제는 친환경축산, 축산물품질인증 제도의 전제조건이 된다.

2. 축산업등록제의 장점

첫째, 질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취향은 가격이 아닌 고품질, 위생·안전성 중시로 바뀌었다. 특히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민감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나라에서도

쇠고기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다는 사실이라든가, 또한 최근 돼지콜레라가 잇따라 발생하자 돼지고기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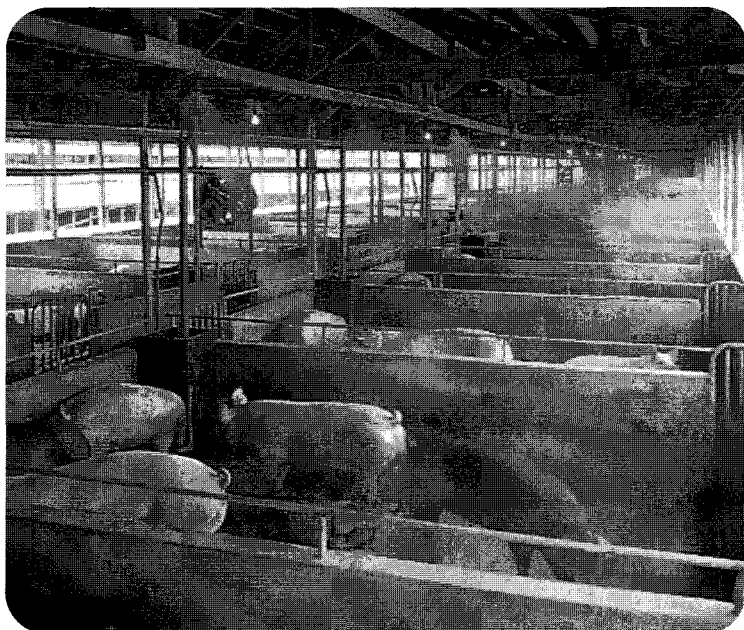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농가가 어떤 축종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육하고 있는가를 행정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소재 파악이 가능하므로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가능하면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간은 물론 지역간에

도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한 요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일단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후속조치가 중요한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친환경축산으로 쉽게 유도할 수 있다.

고품질, 위생·안전성 확보, 동물복지 등은 이제 축산업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사항이 되었다. 그런데 축산업 현장을 가보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알면서도 실제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축산업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첫째,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고품질 · 위생 · 안전성 확보 및 동물복지가 향후 축산업 생존의 관건이 되는 바,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추적시스템(trace back system) 구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에서의 축산물 생산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이 요구될 것인바, 축산업등록제는 그 전제조건이 된다.

셋째, EU, 일본을 위시한 선진외국의 경우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하여 점차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축산물품질인증제도 등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CODEX지침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적극적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여겨지는 바, 축산업등록제는 친환경축산, 축산물품질인증제도의 전제조건이 된다.

을 기울이고 있는 농가 및 생산조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의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외국산 축산물과의 차별화만이 우리 나라의 축산업이 생존해 나가는 길인데,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축산물 생산이 이른바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친환경축산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바, 축산업등록제는 이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셋째, 소비자 니즈(needs)에 부응할 수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즉 모든 식품분야에 걸쳐 원산지표시를 위시한 각종 표시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

고,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소비자들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역추적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생산업체에게 이를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축산업등록제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감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되므로 현 시점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축산업등록제의 단점

첫째,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제약한다.

지금까지 축산업은 농업 가

운데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부문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한 때 투기적인 생산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자 경종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축산부문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앞으로 경종농업에서 축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축산업등록제의 시행은 이들 농가의 작목전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농가의 불만이 표출될 우려가 있다.

둘째, 축산업종사자의 생산의욕이 위축될 수 있다.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

특 집

는 이들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생산규모 등을 결정해 왔는데, 앞으로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와 같은 자율성에 타격을 입게 되어 생산의욕이 위축될 수가 있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거꾸로 농업포기(탈농, 이농)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부의 간섭 및 통제가 증가함으로써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시행주체가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EU의 경우 시행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업체협의회)이다.

시행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심각

하게 고려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조심스럽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4. 축산업 등록제 추진상의 과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의 도입은 소비자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정부는 세부 추진방안을 구상 중에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은 확정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축산업 종사자의 견해가 적극

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 나름대로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 및 추진상의 과제를 정부 및 농가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첫째, 제도의 당위성 및 기존에 시행한 바 있는 신고제와의 차이를 농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시켜야 한다.

둘째, 등록대상 축종 및 등록기준을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등록기준 및 시행세칙을 결정하는 프로세스(process)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넷째,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등록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규제일변도로 나가서는 곤란하다.

다섯째,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혜택이 농가에게 돌아가고, 축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하는 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농가는 첫째, 이 제도의 도입을 무조건 반대해 서는 곤란하다.

축산업등록제의 도입은 패 러다임(paradigm)의 전환, 즉 축산업의 대대적인 구조개편 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경쟁력제고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수용하는 자세 를 보여야 한다.

둘째, 정작 중요한 것은 축 종별 사육밀도를 정하는 것인 데,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정부가 기준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미리 자발적 으로 기준을 설정·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업을 원활하게 시 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센티 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센티브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 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 및

축종의 특성을 고려한 이른바 '친환경·명품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 외 국산 축산물과 경쟁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축산업 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등 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것이다. 정부관계자 및 농가의 현명한 판단 및 선 택을 기대한다. **양동**

안전성, 유효성 검증 소독제

새치-원

- **국내최초 구제역등 OIE A급질병 효과검증**
- 태국KASETSART대 수의과학연구소
- 건국대 동물자원 연구센터
- **안전성 공인**
- 충북대 동물의학연구소, EPA, FDA, USDA 안전성 등록
- **강력하고 광범위한 살균력**
-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소, 미 ONYX 미생물연구소 등
- **강력한 침투력과 세척력**
- EPA 5% 혈청테스트 통과, 음수라인 니플 막힘 해결
- **경수내구성과 지속효과**
- CaCO₃ 750ppm이상에도 효과적, 안정된 알킬배치 화학구조
- **약취 및 해충의 유충란 제거**
- 탈취효과 및 약취원인균 살멸, 유충란 살충효과

음수소독의 최종결론

라스트-X

- 탁월한 음수소독 효과
- 항생제, 사용 절감
- 설사, 호흡기 질병예방
- 가족의 활력 및 사료효율의 증대
- 유방, 외음부, 추체 세정소독
- 니플 막힘 해결
- 강력한 탈취, 약취제거
- 유충란 부화방지·인축에 안전

무독성·무공해·환경위생기업

(주)한성바이오캡

본사문의 전화 : TEL : (043)532-0700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590-1
http : //www.hsdrg.co.kr